

- 효율적 열관리
- 회원의 복리증진
- 전문기술향상

사단
법인

한국열관리사협회보

www.khea.co.kr

발행인/백두인 등록번호/서울(라09204) 등록일자/2002년 4월 2일 발행처/(사)한국열관리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6-5 조은빌딩 4F 대표전화 (02)675-3436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(안),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(2002.2.28, 법률 제6671, 2002.3.25공포)됨에 따라, 에너지사용계획 제출·협의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공공사업주관자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.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·협의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를 현행 연간 1만 toe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4천만 킬로와트 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연간 5천 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2천만 킬로와트 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,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다.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
1).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·협의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를 현행 연간 1만 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4천만 킬로와트 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서, 연간 5천 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2천만 킬로와트 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,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 (안 제6조 제2항 및 제5항)

2).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를 당해 토지의 분양조건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, 토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그 토지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를 공지하여 협의된 내용의 이행을 제고를 도모함(안 제12조 제5항)

3).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,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(안 제23조의3)

나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

1). 법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인정 받은 자로 하도록 규정함(안 제 8조의 2)

2).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자동차로 하고,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으로 관보 또는 일간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정함 (안 제9조의1 제1항, 제2항, 제3항)

다.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(안)

1). 열사용기자재중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

검사신청서의 반려사유와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(안 제44조 제3항)

2).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 할 경우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사용 중지 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, 각종단위표기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SI(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)단위로 개정하고 기존사용하던 단위(M.K.S)도 병기함(안 제45조 제2항, 별표 1, 7, 10, 10의3, 11, 14)



보일러, 냉동기 시공 및 세관 사업부
저수조 세정 및 방수 도장 사업부
에너지 절약 기기 교체 사업부

(株) 에스 플랜트 E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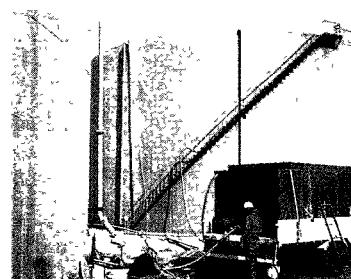
T.(02)2646-1117(대)
F.(02)2646-0728

귀사의 위험물 유류저장탱크 문제점을 책임지겠습니다.



에스 (주) 덕양엔지니어링

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2번지
대표전화 : (02)2636-0997
TEL : (02)678-0997/8, FAX : (02)671-8725



(주)덕양엔지니어링은 현장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·제작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유류저장탱크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.

벵커C유 유류탱크를 청소한 후 경유탱크로 품목 변경 사용



■ 탱크 청소공사 ■ 탱크 내부 라이닝 ■ 탱크 및 배관 보수 ■ 유류사고 긴급 보수 ■ 탱크 용도 폐지공사

주요 공사실적업체

태광산업/신도리코/동부제강/태평양/대한제세공업/홍천하이텍맥주/천안조선업/파주시민회관/청주시청/서울세관/서산시청/한국마사회/수원성균관대학교/용인명지대학교/항공학교/경상대학교/롯데월드/대구파크호텔/무주리조트/백암한화콘도/대전삼우아파트/의정부장암아파트/광주두암주공/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/이천○○작전사령부/대구○○사령부/홍천○○사단/원주○○사단/현대정유에스-오일/저유소/주유소/다수업체